

2012년 인신매매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3 등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강제 노동, 강제 결혼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이다.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제도화된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수용소 강제노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정부가 직업을 배정하기에 북한 주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개인의 의사로 직업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 북한은 전국의 오지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에 13만~20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감되어 있다. 아동을 포함하여 정치수용소에 수용된 모든 수용자는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에 걸쳐 벌목·채굴·경작 등 강제노동을 강요받는다. 보고에 의하면 정치범들은 식량 및 의약품 부족과 가혹한 처벌 등 극도로 열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하며, 상당수가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자 중 상당수가 가혹한 노동 조건, 식량 부족, 구타, 의약품 부족,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해 병을 얻거나 사망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부 유럽, 특히 몽골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정부들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취업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해외로 파견된 상당수 북한 근로자들이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북한 정부 소속 '감시인(minder)'의 감시하에 이동과 통신을 제한받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입수되었다. 신뢰할 만한 보고에 의하면, 외부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정부의 보복 위협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임금은 북한 정부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정부는 각종 정부 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갈취한다. 근로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급된 금액 중 극히 일부분만을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만~1만 5천 명의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벌목장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년 중 휴일은 단 2일뿐이고 생산 목표에 미달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정부는 특히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북한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귀국하기 전까지 임금을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국내 합작사업에 투입되는 북한 근로자 역시 해외 파견 근로자와 유사한 고용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NGO와 연구자들은 현재 중국 북동부 지역에 수만 명의 탈북자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퍼센트가 여성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탈북자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수집된 바 없지만,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불법 밀입국자 신분 때문에 이들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 여성과 여아는 대개 식량, 일자리, 자유, 삶의 희망을 찾아 많은 경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이주하지만 강제로 결혼이나 매춘 또는 노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계 중국인과 북한인으로 구성된 인신매매 조직(주로 남성)이 중국 국경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및 북한 국경수비대 대원들과 공모하여 결혼이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 대상 여성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 여성은 여러 명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인신매매 과정에서 복수의 브로커가 개입한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중국 접경 지역의 보안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 인해 인신매매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확실하다. 자력으로 중국에 밀입국한 일부 북한 여성은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에서 중국 현지의 인신매매법에 의해 유인당하거나 약물에 중독되거나 납치된다. 일부는 일자리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는 인신매매법에 의해 주로 한국계 중국인과의 강제 결혼을 통해 비자발적 가사 노예가 되거나 집창촌 또는 인터넷 성매매 시장으로 팔려가게 된다. 일부는 강압에 의해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접대부로 종사한다.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거나 노동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기준 준수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법 처리나 피해자 보호 혹은 예방 조치 등을 통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민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식량 사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음식이 부족하고 의료 혜택이 거의 전무한 강제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인신매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권고안: 인신매매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밀입국 범죄와 구별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제수용소를 폐쇄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이직을 허용해야 하며 공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을 인신매매의 위협에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정치·경제·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 같은 지원노력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해야 한다. NGO가 북한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사법 처리

북한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동안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 집행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인신매매가 문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 제 233 조는 월경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 234 조는 국경수비대 대원들이 월경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두 조항 모두 범죄자를 강제수용소에 최대 25 년간 수감시킬 수 있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289 조는 미성년자 유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 290 조는 개인이나 단체의 납치를 금하고 있다. 두 조항 모두 3~10 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1946 년에 제정된 남녀평등법 제 7 조는 여성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공정한 재판은 기대할 수 없고 정부는 법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인신매매법을 기소하고 있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법 혹은 강제노동이나 강제 성매매에 연루된 공무원을 기소하거나 유죄를 선고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탈북자들은 처형을 포함하여 정부가 인신매매법을 처벌한 사례들을 보고했다.

피해자 보호

북한 정부가 보고 대상 기간 동안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시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없다. 정부 당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눈에 띄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국내 NGO가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에 입국이 허용된 일부 국제 NGO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이 허가되지 않았다. 정부는 인신매매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행해진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과 접촉했는지, 남한의 문화적 영향에 노출됐는지 여부는 조사하면서도 인신매매 피해자와 불법 밀입국자는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 형법 제 233 조는 월경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 234 조는 국경수비대 대원들이 월경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두 조항 모두 범죄자를 강제수용소에 최대 2~5 년간 수감시킬 수 있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포함하여 중국 당국에 의해 송환된 북한 주민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져 강제노동, 고문, 간수에 의한 성 폭력, 기타 가혹한 처벌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송환된 피해자 중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의 경우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거나 영아를 살해하기도 한다. 보고에 의하면 북한으로 송환된 피해자가 수감 기간 중에 출산한 영아를 수용소 당국에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 노력

북한 당국은 보고 대상 기간 동안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눈에 띄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 국내 상황은 상당수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발시키며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에 처하게끔 만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록 보고 대상 기간 동안 국경경비가 강화되었지만, 정부가 국경 검색을 통해 인신매매 예방을 시도했다는 증거는 없다. 북한 당국은 상업적 성행위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은 2000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